

# 공정위, 카르텔일괄정비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 32개 카르텔제도에 대한 폐지·보완방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55개의 카르텔제도를 검토한 결과 동 카르텔제도 중 32개 제도의 운영에 대해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목)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KDI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카르텔정비는, 종래에는 특정산업의 보호 및 육성, 수출지원 또는 소비자보호 등을 이유로 가격, 생산량, 판매지역 등에 대한 카르텔을 정부가 묵인하거나 법률에 규정을 두어 허용하였으나 이중에서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당초의 취지와 상이하게 운영되는 카르텔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보완이 불가피해졌으며, 한편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카르텔제도의 정비 등을 통한 경쟁체제 구축이 긴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OECD는 지난 '98년 4월 "경성카르텔금지 국제권고"를 채택하고 외국의 경쟁당국이 우리 경쟁당국에 경성카르텔<sup>1)</sup>행위에 대한 조사나 집행을 요청해 올 경우 이에 응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하는 등 각국의 경성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구체화하였고, 주기적으로 각국의 경성카르텔의 타당성과 투명성에 대해 점검하기로 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은 한국에서의 합법적·관행적 경성카르텔행위를 불공정 제도·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양자협정의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증대하

게 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에 카르텔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추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제도개선에 의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카르텔행위를 하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상호 경쟁할 필요없이 시장을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지배할 수 있게 되므로 일면 사업자들간의 지나친 경쟁을 막아 과잉투자나 낭비를 막는 효과도 없지 않았으나, 오히려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기업이윤이 보장되어 한계기업의 존속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높은 가격과 낮은 서비스만큼의 소비자희생이 뒤따르게 되며, 경쟁압력이 없어짐에 따라 사업자의 창의력 발휘, 신기술 개발,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관련사업자 또는 업계의 기득권보호장치로 이용되거나 부정부패 등 사회적 비리도 야기할 소지가 존재하는 등 그 폐해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카르텔에 해당하지만 개별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58조<sup>2)</sup>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55개 제도를 이번 정비검토대상으로 삼고, 관세사에 의한 관세사 보수 결정과 같이 서비스의 품질경쟁 및 품질에 따른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카르텔이나 업체간 담합을 조성하여 상대 경제국에 의한 무역마찰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큰 카르텔,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같이 중소기업간 생산·판매량 제한이나 진입제

1) 경성카르텔(Hard Core Cartel) : 중핵카르텔이라고도 하며, 지난 '98년 4월 OECD의 경성카르텔금지권고에서 정의한 것으로 "사업자간에 가격담합, 입찰담합, 생산량제한, 시장분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쟁자 사이의 반경쟁적 합의, 공동행위 또는 협약을 의미"

2)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카르텔이나 카르텔의 협용범위가 그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카르텔 등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생산량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3개 카르텔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리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이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약 협회의 의약품 표준소매가격 결정제도 등과 같이 법률상 명백한 근거없이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는 카르텔 및 경쟁제한성이 큰 법률상의 규제 등 9개 카르텔은 시행령 및 규제개혁 등을 통하여 폐지할 방침으로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국제적으로 안정되는 농·수·축협·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자조적 공동생산·판매 등의 23개 카르텔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된다.

공정위는 동 공청회와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르텔정비방안을 확정한 후 23개 법률개정대상은 카르텔 일괄 정비제정안에 포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9개 시행령 등 하위법규개정대상 및 규제개혁 대상은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금년중에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

공정위는 이번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제정를 통해 경쟁체제 구축에 따른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우리의 제도개혁 의지를 대외적으로 나타냄으로써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는 한편 경쟁제한적 제도를 철폐하려는 국제적 추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소지가 많은 카르텔을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비해 소요시간과 노력을 단축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 폐지·보완대상 카르텔

### ▶ 일괄정리법 제정대상

#### [폐지]

- 관세사회에 의한 관세사 보수 결정(관세사법)
- 세무사회에 의한 세무사 보수 산정(세무사법)
-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공인회계사 보수 산정(공인회계사법)
- 변호사협회에 의한 변호사 보수 결정(변호사법)
- 대한법무사협회에 의한 법무사 보수기준 결정(법무사법)
- 변리사회에 의한 변리사 보수 결정(변리사법)
- 건축사협회에 의한 건축사 보수기준 결정(건축사법)
- 수의사회에 의한 동물병원 진료비 결정(수의사법)
- 행정사회에 의한 행정사 수수료 결정(행정사법)
- 노무사 수수료 결정에 대한 공인노무사회의 의견제시(공인노무사법)
- 증권거래소의 매매위탁수수료 및 매매위탁증거금 요율 결정(증권거래법)

- 주류업단체의 주류가격·규격 등의 통일에 관한 사업(주세법)
- 비실균탁주의 공급구역제한(주세법)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제도(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법)
- 업업조합의 소금판매 등에 관한 단체계약 체결(업업조합법)
-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한 해외공사 수주경합의 조정(해외건설촉진법)
- 해외건설협회의 자율규제(해외건설촉진법)
- 축협중앙회장에 의한 가축매매수수료 결정(축산법)
- 수출진흥을 위한 농수산물의 생산자 지정, 생산수량, 판매가격 조정 등(농수산물수출 진흥법)
- 제주도 농·림·축·수산물 수급안정심의회의 농수산물 수급 등 심의(제주도개발특별법).

### [보 완]

-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의한 보험요율 공동산출(보험업법)
  -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험요율 산출범위를 순보험요율로 축소하고 부가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자사의 경영효율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산출
-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한 산업자원부 장관의 조정명령(대외무역법)
  - 조정명령제도의 발동사유를 수출관련 정부간 대외협정(업계간 협정 제외)의 준수 및 방산물자의 수출제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
- 수출입관련조합의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사업등(대외무역법)
  - 수출입조합 및 수출입조합에 대한 설립근거를 삭제
  - 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정부간 협정에 근거한 수출승인(추천) 외의 자율적 질서유지를 위한 제도 폐지
  - 수출승인 대상품목 중 수출질서 유지를 위한 품목에 대한 수출승인제도 폐지

### ▶ 시행령 등 개정 및 규제개혁대상(9개)

- 외부감사인 수임한도 설정(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
- 신업자원부장관의 전기공사 수급한도액 결정(전기공사업법)
- 약품공업협동조합의 규격품 한약재 공동구입 및 배분(약사법시행규칙)
-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 수급조절 및 수입한약재 배정(약사법시행규칙)
-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수수료등 결정(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한국유선방송협회에 의한 자재의 알선·공급 등(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 종합유선방송협회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조정(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시 사업자단체와의 공급계약서 첨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